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5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3. / 박윤옥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축하금 등 용어를 현행화하며 그 밖의 조문을 조례의 목적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양가정 지원 내용을 확대함(안 제6조)
- 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함
(안 제8조, 제9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개정안은 입양가정 지원 및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국가사업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양 축하금 등의 용어와 서식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6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3. / 한송연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의 날’ 등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2조제3호, 제15조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 ‘어린이집’의 정의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
- 적용 법규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삭제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중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

- 보육료 규정 삭제 (안 제5조2항)
 -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에 의해 지원되므로 현 제도와 맞지 않아 삭제
- ‘위원회’ 를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로 변경 (안 제18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 조례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추가하여 용어의 혼란 방지
-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예산 지원 및 ‘보육의 날’ 추진 근거 신설 (안 제29조의2)
 -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의 날 등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정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 시에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현 제도와 맞지 않는 보육료 규정인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문인 제15조의2 규정에서 제1항의 인용 조문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이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1항을 삭제함
- 아울러 영유아의 권익 보호 및 보육 교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보육의 날’ 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7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3. / 이경숙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하천 수질 보전활동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물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 「물관리기본법」 제3조 용어 적용 (안 제2조제2호, 6호, 7호, 8호)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 적용 (안 제2조 제5호, 제11호가목)
-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사항 구체화

- 안 제23조 제목 변경 :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
-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2호, 13호)
- 위원회 기능 구체화 (안 제10조제9호, 10호)
- 지원사업 구체화 (안 제23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 사항 추가
(안 제11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주민과 민간 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하천 수질보전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민간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8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3. / 박운옥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기존)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변경) 남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제4조)

-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제7조)
-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안 제8조,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좀 더 세부적인 시책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97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 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 2) 위탁시설 개요

○ 재계약 3개소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다산푸른숲	조○미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23번길 17	379	88	'25.3.1.~'30.2.28.
별내좋은친구	김○숙	남양주시 별내5로 189-130	258	54	'25.3.1.~'30.2.28.
힐즈파크	정○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3번길 25	397	78	'25.4.1.~'30.3.31.

○ 신규위탁(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2개소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품속	김○현	남양주시 가운로2길 113	84	20	개원일부터 5년 (2025. 3. 개원 예정)
무릎학교	정○정	남양주시 평내로 113	84	20	

* 장기임차 전환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 신규위탁(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1개소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가칭)도곡2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	350	49(예정)	개원일부터 5년 (2025. 9. 개원 예정)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 대상 공동주택 사업 개요

사업명	세대수	규모	준공예정	위치도
덕소 도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총 908세대	지하2층, 지상22층, 12개동	2025. 7.	

○ 재위탁(변경위탁) 2개소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비고 (현 위탁체)
꿈이가득한	남양주시 별내4로 62	267	62	'25.5.8.~'30.5.7.	이○혜
미리별	남양주시 별내3로 251	343	51	'25.5.8.~'30.5.7.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철)

3)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5년
-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 현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
- 신규위탁(장기임차 전환) : 국공립 전환 신청 후 사전적격심사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완료)
 -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국공립 전환 대상 추천
- 신규위탁, 재위탁(변경위탁)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 ※ 최종결과 70점 이상, 1·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소요예산 : 4,671,026천원(2024년도 예산 기준)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4,671,026	2,833,677	1,837,349
1	다산푸른숲	88	17	935,196	603,866	331,330
2	별내좋은친구	54	10	586,101	363,028	223,073
3	힐즈파크	78	20	788,908	523,469	265,439
4	품속	20	9	283,762	151,082	132,680
5	무릎학교	20	7	272,987	195,651	77,336
6	(가칭)도곡2구역	49 (예정)	- (14명 기준)	628,279	240,786	387,493
7	꿈이가득한	62	10	614,171	351,937	262,234
8	미리별	51	11	561,622	403,858	157,764

6)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연번	어린이집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40점)	2차 평가(60점)
				사전평가, 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 회계점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1	다산푸른숲	적격	92.17	41*	51.17
2	별내좋은친구	적격	91.17	38	53.17
3	힐즈파크	적격	80.50	32	48.50

* 1차 평가 ‘시책사업 운영’ 심사항목 가점(1점) 적용 시 최종 41점 만점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참여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8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가능자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청소대행 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청소행정 여건 및 입찰계약 방식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계약기간 내용 정비
- 기타 혼동하기 쉬운 용어 정리

나. 주요내용

- 제10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 를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대행자” 라 한다)” 로 개정

- 제10조제4항 중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를 “대행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약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함
- 기타 혼동하기 쉬운 용어 정리(안 제3조, 제9조의2, 제11조,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호에 열거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하 “폐기물 처리 대행자” 라 한다.)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대행 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9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청소행정 여건과 맞지 않은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방법 정비
- 조례에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적용 규정이 있어 기능이 불필요한 위원회 규정 정비(삭제)
- 현재 입찰계약 방식과 상충되는 평가결과 적용기준(계약기간 연장, 대행구역 축소 등) 정비

나. 주요내용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합리적 개정(안 제7조, 별표1)
- 평가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9조의2,3)
-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 개선(안 제13조, 별표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방법 개선과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 결과 적용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의안번호

600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차장 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여, 법적 의무설치 수량(총 주차대수의 5%이상) 이상인 총 6대(5기)의 충전시설[급속(100kw) 2대(1기), 완속(7kw) 4대(4기)]을 설치하고자 하며,
-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허용 허가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및 충전시설 설치 이후, 충전사업자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금회 안건을 상정함.
- 향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오남읍 오남리 41번지 일원
- (사업목적) 오남호수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량) 총 주차대수 112대[전기차(6), 장애인전용주차(6) 포함]
 -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 6대(5기)[급속(100kw) 2대(1기), 완속(7kw) 4대(4기)]
- (사업비) 시 소요예산 없음(※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총사업비: 69억원)
- (사업기간) 2024. 3. ~ 2025. 3.
- (사업내용)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운영

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계획[6대(5기)]

대상시설	충전시설 수(기기 수)			비고
	총계	급속(100kw)	완속(7kw)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공영주차장)	6대	2대(1기)	4대(4기)	총 6대 (5기)

3)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3.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토목·전기·통신공사) 착공
- 2024. 10. 31.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토목·전기공사) 준공
- 2024. 11. 20.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통신공사) 준공
- 2024. 11. 25. ~ 11. 29.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24. 12. ~ 2025. 3.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완료 및 주차관리과 관리이관

4) 위치도 및 설계도면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규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1

2024. 12. 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4.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4.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출산 장려금” 용어를 지원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출산가정)의 입장에 맞도록 “출산축하금” 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원 대상 요건을 개선하고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기존)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변경)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출산 장려금” 에서 “출산축하금” 으로 용어 개선(안 제2조, 안 제3조 등)

○ 지원 대상자의 요건 개선 및 범위 확대(안 제4조)

○ 지원 신청기간 확대(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출산 장려금” 용어를 “출산축하금” 으로 변경하고 축하금 신청기한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